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 금액 상향 조정(안 제15조)
 - 현행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정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 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 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 ----- <u>20만원</u> ----- -----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장 호
	담 당	김 진 오
	담 당 자	김 대 실 (480-6852)